

주식회사 그리드위즈

정 관

제 정 2013.03.03.

1차 개정 2013.08.23.

2차 개정 2014.09.26.

3차 개정 2015.08.18.

4차 개정 2016.04.25.

5차 개정 2017.07.19.

6차 개정 2018.03.27.

7차 개정 2020.12.15.

8차 개정 2022.08.04.

9차 개정 2023.03.31.

10차 개정 2024.03.27.

11차 개정 2025.03.31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그리드위즈"라 한다. 영문으로는 "Gridwiz Co.,Ltd"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전자 제조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3.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
4. 통신기술 컨설팅업
5. 시스템 통합업
6. 전력수요 관리사업 및 서비스업
7.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
8. 지능형 전력망(Smart-Grid) 관련 사업
9.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0. 전기공사업
11. 정보통신공사업
12. 전기자동차충전기 제조, 판매 및 설치업
13.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성남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ridwiz.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2023.03.31)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유무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매 종류주식 발행시에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권리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종류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한다. 각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 ④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4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배당률, 존속기간,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배당률, 존속기간,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전환조건 등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⑥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발행가액 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 4 <삭제> (2022.08.04)

제9조의 5 (제3종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수의 의결권의 유무, 배당률, 존속기간,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전환 조건 등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이하 '제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단, 제9조의 2와 제9조의 3에 의한 종류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다.
- ③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④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3종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주식 1주를 기준으로 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관하여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전환 전 우선주식의 총발행가액과 전환 후 보통주식 발행가액총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익일부터 10년 내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⑩ 제3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⑪ 제3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를 명시한 통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생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주주는 제3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 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4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삭제> (2023.03.31)

제16조 (주권의 재발행) <삭제> (2023.03.31)

제17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삭제> (2023.03.31)

제18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20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

행하는 경우

2. 총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되 그 종류는 이사회가 정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사채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 전까지로 하되,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총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되 그 종류는 이사회가 정하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전까지로 하되,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총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24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제규정을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6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 (주주총회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의 경우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아이디알서비스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나. 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아이디알서비스가 외부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아이디알서비스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1절 이사

제38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1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사회

제4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5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거래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50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51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사

제52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3조 (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4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5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8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2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3조 (분기배당)

- 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64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65조 (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회사는 회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③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부칙<2013.03.0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03.0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0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08.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09.2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8.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08.1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04.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7.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3.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12.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8.04>

제1조 (세칙제정)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08.04부터 시작한다

1. 제8조 2(주식 등의 전자등록)는 구주권 제출 공고익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제8조 2(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제14조(주권의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 제5항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기 위하여 주식의 신규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의 벤처기업 관련 조항은 회사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시점부터 비상장법인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고, 상장법인 관련 조항은 기업상장 이후에 시행한다.
4. 제18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 전자등록 관련 조항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기 위하여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제28조(소집통지)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기업 상장 이후에 시행한다.
6. 제63조(분기배당)는 기업 상장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3.03.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0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이 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소집통지)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과 제63조(분기배당)는 기업 상장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4.0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03.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3.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03.31.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13.03.03.

1차개정 2013.08.23.

2차개정 2014.09.26.

3차개정 2015.08.18.

4차개정 2016.04.25.

5차개정 2017.07.19.

6차개정 2018.03.27.

7차개정 2020.12.15.

8차개정 2022.08.04

9차개정 2023.03.31

10차개정 2024.03.27

11차개정 2025.03.31